

	연계교육사업단 운영규정	제 정 일	2026. 9. 1.
		개 정 일	
		개정차수	차
		담당부서	연계교육사업단

제 1 장 총 칙

제 1조 (목적) 이 규정은 직업계고-전문대학 교육과정 연계 선도대학 지원사업(이하 '연계교육사업'이라 한다)의 성공적 수행과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하여 연계교육사업단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제 2조 (사업) 연계교육사업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연계교육사업 운영계획 수립 및 총괄
2. 직업계고·전문대학·산업체 컨소시엄 협약 및 협력체계 운영
3. 연계 교육과정 개발·운영 및 학점연계·인정 지원
4. 참여학생 모집, 진로·진학 지도 및 취업연계 프로그램 운영
5. 사업비 예산배분 및 집행관리
6. 사업 실적 및 성과지표 관리 감독
7. 기타 각 호에 부수되는 사업

제 2 장 조 직

제 3조 (조직 및 임명) ① 연계교육사업단은 총장 직속기구로 두며, 제2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.

② 연계교육사업단의 단장은 교무위원급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.

제 4조 (사업전담조직) 연계교육사업단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담 교직원을 둘 수 있으며, 이들에게 연계교육사업단의 업무와 이와 관련된 우리 대학의 교육·연구업무 등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.

제 3 장 위원회

제 5조 (사업운영위원회) ① 연계교육사업의 주요 추진 사항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사업운영위원회(이하 '위원회'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연계교육사업단장을 위원장으로 하며, 위원은 학과장, 직업계고 및 산업체 관계자, 외부전문가 등 10인 내외로 구성하고, 연계교육사업단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.

③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본 사업기간으로 하고, 위원의 변동으로 인한 위촉기간은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.

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
2. 사업비 운영 집행기준 및 예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
3. 컨소시엄 및 협력체계 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
4. 기타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

제 6조 (성과관리위원회) ① 사업 추진과 운영의 객관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연계교육사업단 내에 성과관리위원회를 둔다.

② 성과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내외로 구성하며, 위원장 및 위원은 연계교육사업단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.

③ 성과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사업의 성과 평가 및 심의
2. 성과에 대한 개선방안 및 환류에 관한 사항
3. 기타 사업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

제 7조 (소집 및 의결) 위원회 및 성과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,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 8조 (기타)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업 관련 법규 및 지침과 본 대학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